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변경, 철회) 신청서

(앞쪽)

관리번호	-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④ 전자우편주소
재산별 구분	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의 상속재산 [] 그 밖의 상속재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을 적용받은 증여재산 [] 그 밖의 증여재산			
피상속인(증여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⑧ 신고(고지납부)기한	⑨ 총 납부세액			⑩ 최초 납부세액			⑪ 연부연납 대상금액(⑨-⑩)			
구 분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6 회	7 회	8 회	9 회	10회
납부예정일										
납부예정 세액										
구 분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20회
납부예정일										
납부예정 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6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최초,[]변경,[]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1부 2. 은행의 지급보증서 1부 3. 납세담보제공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㉔란에는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기한 후 신고 포함)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증여세)액을 적습니다.
2. 연부연납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로 합니다.
 - 가. 상속세의 경우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 2)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 나. 증여세의 경우
 -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 2) 1)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3.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경우로서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text{연부연납 대상금액} / (\text{연부연납기간} + 1)]$ 으로 하며,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4.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text{연부연납 대상금액} / (\text{연부연납기간} + 1)]$ 로 합니다.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5. 납부예정세액은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연부연납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한 가액을 적습니다. 다만, 가산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합니다.
6.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되,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했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세액 계산명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구 분	자 산 종 류	㉮ 금 액	㉬ 담보채무액	순익(㉮-㉬)
기업상속 재산가액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기타			
	① 계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사업관련 자산 가액 비율	③ 총자산가액		
	사업무관자산 가액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 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제2호 해당자산	
		㉣ 과다보유현금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 하는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③ - ④)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⑤ ÷ ③)		
⑦ 기업상속 재산가액 (② × ⑥)			

다. 기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연부연납세액

⑧ 상속세 납부세액		⑨ 총 상속재산가액		⑩ 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 금액	
⑪ 연부연납세액 [⑧ × {(① 또는 ⑦) - ⑩} ÷ (⑨ - ⑩)]					

신청인 제출서류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입증서류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주식평가내역 및 사업무관자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재무상태표 등)	수수료 없 음
-------------	---	------------

작성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적용합니다.

1. "① 계"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합니다), 건축물, 기계장치 및 그 밖의 사업용 자산(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등은 제외)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적은 후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3. "③ 총자산가액"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4.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㉞ ~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③ 총자산가액"에서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를 뺀 가액을 적습니다.
6. "⑧ 상속세 납부세액"란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㉞ 공제·면제 후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7. "⑨ 총 상속재산가액"란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을 적습니다.